

보 도 자 료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2016헌마41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 위 조항들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석태의 반대의견이 있다.



2019. 4. 11.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1979. 10. 18. 체포되어 즉결심판소에서 구류 20일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석방된 사실이 인정되어 2016. 2. 2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 마목의 ‘관련자’로 심의결정되고, 2016. 3. 15. 위 위원회로부터 이를 증명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증서’를 받았다.
- 청구인은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는 부마항쟁보상법 제 21조, 제22조가 그 대상을 관련자 중 일부로 제한하여 그 요건에 자신이 해당하지 아니하자 위 각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51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 조항’이라 한다)과 제2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생활지원금 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 11851호로 제정된 것)

제21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 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을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제22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3.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의 요지

- 부마항쟁보상법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자와 그 유족이 더 간의 절차를 통하여 일정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등의 수급권은 전통적 의미의 국가배상청구권과 달리 위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수급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
- 이 사건 보상금 조항이 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자는 그 희생의 정도가 다른 관련자에 비하여 크고, 그 유족도 다른 관련자의 가족에 비하여 희생의 정도가 크고 그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 조항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

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등은 국가가 관련자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와 지원금의 액수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생활지원금 조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에 한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석태)

-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그 보상 및 예우에 관하여 종래 다른 민주화운동과 함께 규정받다가 부마항쟁보상법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부마항쟁보상법은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제19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관련자로 인정된 자라 하더라도 부마민주항쟁에 의한 구금일수가 30일 이상이 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춘 자에 한하여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은 단기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금은 그 기간이 통상의 민주화운동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장기간의 구금만을 대상으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생활지원을 규정한 결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8.1%의 관련자만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 부마항쟁보상법은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 범위를 종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보다 확대하였는데(제2조 제2호), 이는 부마민주항쟁에는 여타의 민주화운동과 다른 상황적 특수성이 존재하고, 기존의 법률로 보상받지 못하는 관련자까지도 포섭하여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입법적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심판대상조항이 보상 등의 요건과 내용을 확대시키지 않은 것은 부마항쟁보상법을 별도로 제정한 입법적 결단에 배치되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에 기인해 생활지원금의 대상자격 요건 중 구금일수의 제한을 없애

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검토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개정안과 같이 생활지원금 대상자격 요건을 완화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2016년 3억 4,700만 원으로 예상되었는바, 지급대상의 확대가 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엄격히 제한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